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0
----------	-----

2021. 4. 19.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2.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 나. 상정의결
  -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4. 19.)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수진)

- 가. 제안이유
  -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법률 개정안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강남 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 및 일부 문구 개선
- 나. 주요내용
  - 제2조(구성) 중,
    -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위촉 조건 중 ‘법관’ 을 ‘판사·검사·변호사’ 로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 추가
    - 제2항의 문구 개정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조례 용어 일부 개정

- 위촉한다 → ‘위촉’ 으로 변경 [제2조(구성) 제1항제1호]
- 임명한다 → ‘임명’ 으로 변경 [제2조(구성) 제1항제2호]
- 자(者) → ‘사람’ 으로 변경 [제2조(구성) 제1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2항]
- 하되 → ‘하며’ 로 수정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항]
-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 ‘위원수를 계산할 때’ 로 수정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4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21. 2. 19. ~ 3.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 추가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sup>1)</sup>이 2020.12.22.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위원 위촉자격을 법률에 따라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구성)제1항에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

####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020.12.22. 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위원의 일원이므로 <사례><sup>2)</sup>와 같이 조의 제목을 ‘(위원의 임기)’ 로하고, 조문 중 ‘위원장·부위원장’ 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사례><sup>3)</sup>와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4항의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sup>4)</sup> 제19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려는 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

---

## 2)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토의견을 보면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회의록 작성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문에 대하여 신설 및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 지금까지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준하여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사무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나, 만약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면 검토의견대로 좀 더 명확한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 토론 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